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6. 21(금) 10:00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검 토 보 고 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검 토 보 고

###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3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5. 28.
- 라. 회부일자 : 2023. 5. 28.

###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금천구의회 의 승인을 받고자 함.

### III. 참고사항

####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 관련서류 : 2023회계연도 결산서(안)

## IV. 푸른미래도시국 결산

### 1. 푸른미래도시국 결산 총괄

#### 가. 세입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8,674,031,000	10,119,207,900	8,112,793,620	80.1%
주 택 과	740,412,000	2,602,439,330	618,917,550	23.7%
도시계획과	582,500,000	580,450,310	580,450,310	100%
주거정비과	890,600,000	890,736,080	890,736,080	100%
공원녹지과	6,284,207,000	5,762,911,130	5,740,018,630	99.6%
건축과	176,312,000	282,671,050	282,671,050	100%

#### 나. 세출 총괄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B/A)
계	50,665,086,140	32,763,460,300	13,573,313,350	2,970,590,243	64.6%
주 택 과	606,065,000	543,413,120		57,605,820	89.6%
도시계획과	2,421,355,960	1,835,670,130	496,630,000	61,740,980	75.8%
주거정비과	5,785,289,180	4,352,743,010	496,091,000	205,815,673	75.2%
공원녹지과	41,287,132,000	25,590,753,000	12,580,592,350	2,542,027,340	61.9%
건축과	565,244,000	440,881,040	-	103,400,430	77.9%

## 다. 집행잔액

○ 예산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사유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계	50,665,086,140	2,970,590,243	250,943,183	0	130,488,680
			85,557,620	2,503,600,760	0
주택과	606,065,000	57,605,820	5,128,760	0	5,600,000
			0	46,877,060	0
도시계획과	2,421,355,960	61,740,980	27,315,750		
				34,425,230	
주거정비과	5,785,289,180	205,815,673	151,878,683	0	39,300,200
			370,000	14,266,790	0
공원녹지과	41,287,132,000	2,542,027,340	61,541,870	0	85,588,480
			85,187,620	2,309,709,370	0
건축과	565,244,000	103,400,430	5,078,120	0	0
			0	98,322,310	0

## 라. 푸른미래도시국 집행률 저조사업

(단위 : 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가)	지출액(나)	집행잔액(가-나,다)	집행률(나/가)
주택과	위반건축물 정비	5,390,000	3,499,350	1,890,650	64.9%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15,880,000	4,319,450	11,560,550	27.2%
도시계획과	신안산선역 주변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	3,300,000	2,221,000	1,079,000	67.3%
	석수역세권 (철재상가) 일대 정비사업을 통한 역세권 중심기능 육성	5,264,000	2,800,000	2,464,000	53.2%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관리 강화	3,120,000	2,020,000	1,100,000	64.7%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 및 관리	7,560,000	5,099,900	2,460,100	67.5%
주거정비과	빈집 주택 실태조사	19,200,000	-	7,071,500	63.2%
공원녹지과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20,000,000	10,790,000	9,210,000	54.0%
공원녹지과	빈집활용 도시정원 조성	23,000,000	6,779,000	16,221,000	29.5%
건축과	건축민원 처리	49,300,000	33,651,300	15,648,700	68.3%

## 2. 예산의 전용 : 해당사항 없음

##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5	13,573,313	6	3,256,630	29	10,316,683
도시계획과	2	496,630	2	496,630	-	-
주거정비과	4	496,091	-	-	4	496,091
공원녹지과	29	12,580,592	4	2,760,000	25	9,820,592
건축과	-	-	-	-	-	-

## 4. 성과 보고

(단위: 천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1	7	15	0	15	0	32,763,460	27,951,321	4,812,139
푸른미래도시국	1	7	15	0	15	0	32,763,460	27,951,321	4,812,139

### 가.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li> <li>- 주택공사 실태점검 및 위반건축물 관리</li> </ul> </li> <li>○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되는 행복도시 금천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밸리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독산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li> </ul> </li> <li>○ 맞춤형 주거정비를 통한 행복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li> <li>- 주민체감 및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li> <li>- 주택 재개발을 통한 품격높은 주거환경 제공</li> </ul> </li> <li>○ 푸른꿈이 미래가 되는 녹색행복 1등 도시 금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악산 다이나믹파크 조성</li> <li>- 주민친화형 안양천 생태복원 및 반려텃밭 보급</li> <li>- 시흥계곡 힐링 오미원 조성</li> </ul> </li> <li>○ 안전하고 살기좋은 건축환경 조성으로 주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자문을 통한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률 향상</li> <li>- 주민편의 및 복지공간 추진</li> <li>- 주민참여 건축행정 추진</li> </ul> </li> </ul>
---

### 나. 정책사업목표 현황

(단위 : 원)

정책사업목표	성과 지표수	달성 지표수	단위 사업수	결산액
이웃과 소통하는 안전한 주거문화 조성	3	3	4	483,457,960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되는 행복도시 금천 구현	2	2	2	1,513,235,450
맞춤형 주거정비를 통한 행복도시를 조성	3	3	2	1,443,206,150
푸른 꿈이 미래가 되는 녹색행복1등 도시 금천	2	2	2	11,360,451,200
푸른 꿈이 미래가 되는 녹색행복 1등 도시 금천	1	1	1	502,688,400
푸른 꿈이 미래가 되는 녹색행복1등 도시 금천	1	1	1	4,922,444,100
안전하고 살기좋은 건축환경 조성으로 주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	3	3	4	290,040,530

## V. 검토의견

### 1. 세입·세출 결산

- 2023회계년도 푸른미래도시국 세입결산액은 81억 1,279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징수률은 80.1%이며,
- 예산현액 506억 6,508만원에서 지출액은 327억 6,34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7,05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64.6%이며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정산잔액 2억 5,094만원, 낙찰차액 8,557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미사유 1억 3,048만원 지출잔액 25억 360만원임.
- 세입 부문에서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 비율이 낮게 나타난 이행 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과목에 대해서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봄. 미수납액에 대한 의무사항 및 상세 안내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 하여 효율적 체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총 6건 32억 5,663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은 총 29건 103억 1,668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금천구 이월사업비는 5년 평균 12.5%로 매년 증가 하는 추세임.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여러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집행부서는 사업 초기부터 세심한 관리를 통하여 이월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 3. 성과 보고

○ 전략목표 : 도시 주거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푸른 미래도시 조성  
푸른미래도시국은 1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정하였고, 계획대로 성과지표 15개를 전부 달성함.

주요 성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개선, 저층 주거지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주민친화형 안양천 조성,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 등이 있음.

### 4. 검토의견

○ 2023회계연도 푸른미래도시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2023년 예산 집행잔액이 2022년 대비 다소 증가되었으며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재정의 유지가 중요하다 보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 필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관계법령

## ☞ 예산·결산 자료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8. 4.]

##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08호, 2024. 4. 16., 일부개정]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년 이상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4. 16.>